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 중독여부확인 서류 제출 안내

「초중등교육법」 및 「유아교육법」, 「교원자격검정령」 및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에 따라,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졸업자는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2027년 2월 졸업예정이거나 기졸업자 중 2027년 2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하는 교직이수 예정자는 다음의 안내를 확인하여 약물중독 검사결과를 기간 내에 교원양성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1. 제출서류: **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**

2. 검진방법: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사 →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
(의료기관에 따라 검사 비용 및 통보서 발급 기간 상이)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1차검사
(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)</td><td>음성
반응</td><td>▶</td><td>검사결과통보서
발급/제출</td><td>- 의료기관 방문 수령, “음성/양성” 결과 기재</td></tr>
<tr><td>양성
반응</td><td>▶</td><td>2차 검사(음성)
또는
의사 상담 후
진단서 발급/제출</td><td>-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, ‘양성’ 반응 시 진단서 제출 필요
-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
- 병원 방문 접수, 의사 상담 후 수령
(“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” 기재)</td></tr>
</table>

가. 검사 종류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**‘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’**를 판별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해야 함.

나. **TBPE 검사의 경우 대마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마 검사를 추가하여** 검사 종류 모두 표기 또는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한다는 문구가 검사결과지 또는 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함.

다.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필수 포함 내용

1) 검사 종류 및 검사 결과 (음성/양성)
2) 검사자 인적사항 (이름, 생년월일 등)
3) 병원 직인 혹은 의사 직인 (복사본 제출 불가, 반드시 원본 제출)

라. **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**(면허 취득, 채용 신청용 등)의 경우, **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**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, 준용 가능

3. 서류 유효기간: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·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

4. 검진 기관: 건강검진센터, 정신건강의학과, 가정의학과, 내과 등
(검사 및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문의, 보건소에서는 판별 검사 불가)
※ 우리대학 근처 「연세우리들의원」(서울 용산구 청파로47길 53 / T. 02-716-4385)에서도 **TBPE+대마검사**를 실시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바랍니다.

5. 제출 기한: 2026. 12. 30.(수) 까지

6. 제출 방법: 원본 제출 필수(방문 또는 등기우편) **[사진촬영, PDF파일, 이메일 발송 등은 불가]**

가. 방문 제출 장소: 교원양성센터(진리관 504호)
나. 방문 제출 시간: 학기 중(12/1~12/21) 월-금 09:00~17:30 /
방학기간 중(12/22 부터) 월-목 10:00~17:00, 금 10:00~15:00
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다. 우편 제출 주소:
(04310) 서울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504호 교원양성센터

7. 유의사항

가.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졸업대상자 및 기졸업자는 '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'와 함께 본 검사결과서(또는 진단서)를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.

나.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검정을 실시하게 되므로, 기간 내에 미제출 시 2027년 2월에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.

8. 문의: 교원양성센터 (02-2077-7352 / 02-710-9027)

참고 | **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(안)**

진단서

원부대조필 인

병록번호 _____
연번 _____
주민등록번호 _____ - _____

성명		성별		생년월일		연령	
주소				전화			
병 명							
소견	**위 사람은** **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** **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** 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						
비고							
용도	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			진단일			
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	☐ TBPE ☐ 진단시약검사 ☐ 기 타()						

발 행 일 :
의 료 기 관 :
주소 및 명칭 :
전화 및 FAX :
면 허 번 호 : 제 _____ 호 의사성명 _____ (인)

※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,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